

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학생 선발 지침

제정 2016.03.29.

개정 2018.05.02.

1. 이 지침의 적용 범위

이 지침은 글로벌인재 특별전형,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, 기타 이와 유사한 국제학생 선발제도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,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하고자 지원한 국제학생(교환학생 제외)을 선발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정함.

2. 선발 기준

- 가. 학교성적, 추천서, 자기소개서, 기타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능력, 법학적성, 어학능력, 학업계획의 구체성과 진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에 면접 결과를 고려함.
- 나. 제출서류가 미비 되거나 지원서의 진지성이 현격히 결여된 경우 부적격 판정함.
- 다.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인원을 선발함.
- 라. 박사과정 지원생의 경우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지도를 담당하여 줄 담당 교수가 정해져야 입학 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함.
- 마.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함.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제출서류에 나타난 지원자의 능력에 비추어 달리 판단할 수 있음.
 - (1) 한국어 능력 : 재외동포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인 자,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정규과정 5급 이상 이수한 자
 - (2) 영어 능력 :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, 영어권 대학 학부 졸업자, TEPS 650점 이상이거나 TOEFL 90점 이상인 자

3. 선발 절차

- 가. 교육지원실장이 일차적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국제학생 평가서(붙임)에 정리하며, 평가의견은 ○, △, ×로 기재함.
- 나. 위 결과를 토대로 교무, 학생, 기획부원장으로 구성된 대학원 특별전형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관련 서식에 따라 입학본부에 통보함.
- 다. 원장은 필요시 위 결정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생지원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선발결과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학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.

부칙 <2016.3.29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5.2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제학생선발 평가서

지원 과정	이름	국적	출신 대학 (세계 랭킹)	전공	학점	어학	추천인 및 추천의 신뢰성	기타 특이사항	평가 의견

* “기타 특이사항”에는 박사 과정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을 담당할 지도교수를 기재함. 지원서, 학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특별히 충실하거나 부실할 경우에도 동 란에 기재함.